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
----------	-------

제출년월일 : 2004. 2. 4.

제출자 : 파주시장

□ 재안이유

- 사회적 여건 변화와 경제적 발전, 경영규모의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 지원한도 및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 농축산업 및 기타 1차 산업의 농업경영중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무이자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제명 및 내용 중 “새마을”을 “농어업”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경
- 나. 특허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설하고, 융자한도를 농어가당 2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등 단체는 1억원 이하로 하되 무이자로 지원(안 제5조제2항)
- 다. 일반지원사업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융자지원한도를 농어가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대부이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조정 함(안 제7조)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새마을”을 “농어업”으로 한다

제1조 중 “주민”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3조제1항 및 제3항·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제16조·제17조제1항 및 제2항중 “새마을”을 “농어업”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지원사업

가.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 사업

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축산업 및 기타 1차산업과 관련된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제7조제1항중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5천만원, 농어가당 1천만원 이하로 하되”를 “농어가당 2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5천만원 이하로 하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2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 이하로 하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대부신청서”를 “농어업소득사업융자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는 물적담보, 나머지 50퍼센트는 연대보증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농어업소득사업용자신청서

1. 영농규모

구분	영 농 (어) 규 모											주작목현황	
	농 지 규 모(ha)						축 산(두)				어선업 (톤)	주작목 및 특목명	규 모
	계	전	답	초지	과수	양어장	젖소	한우 비육우	양돈	기타			
면적 및 규모													

※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가족자가사육증명 등 영농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경 력

< 농 어 가 >

영농(어)경력 (년)	최종학력	영농(어)후계자 지정 년도	농어촌지도자 가입 년도	작 목 반 활동상황	농어업관련 자 격 증	기타농업 관련경력
	학교명: 졸업년:			작목반명:		영농(어)일수

< 농어업 법인, 작목반 >

단 체 명	설 립 일	주 사 업	출 자 액	조합원수	비 고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비		
			계	융자금	자부담
계					

※ 세부 사업계획서 : 별첨

위와 같이 농어업소득사업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인)

위 신청인이 귀 시로부터 차용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보증인 주 소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인)

보증인 주 소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u>새마을</u>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파주시 <u>농어업</u>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농어업인</u> ----- ----- -----
제2조(기금의 조성)(생략)	제2조(기금의 조성)(현행과 같음)
1. <u>새마을</u> 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1. <u>농어업</u> -----
제3조(심의위원회) ① <u>새마을</u> 소득사업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상환연기등 중요 안전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u>새마을</u> 소득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 <u>농어업</u> ----- ----- ----- <u>농어업</u>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u>새마을</u> 소득사업 관련 단체임원, 농업관련 단체장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u>농어업</u> ----- -----
④ ~ ⑤(생략)	④ ~ ⑤(현행과 같음)
⑥(생략)	⑥(현행과 같음)
1. <u>새마을</u> 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1. <u>농어업</u> -----
2. <u>새마을</u>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및 상환 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2. <u>농어업</u> ----- -----
3. 기타 <u>새마을</u>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u>농어업</u>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용자대상 사업)(생략) 1. ~ 2. (생략) <u><신 설></u> 3. (생략)	제4조(용자대상 사업)(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특별지원 사업</u> 가. <u>특히 또는 친환경인증 사업</u> 나. <u>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u> 4. (현행과 같음)
제5조(용자대상) ①(생략) ②(생략) 1. ~ 2. (생략) <u><신 설></u>	제5조(용자대상)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농축산업 및 기타 1차산업과 관련된 특</u> <u>히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수출</u> <u>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u> <u>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u>
제7조(용자한도 및 이율) ①용자 한도액은 <u>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당</u> <u>5천만원, 농어가당 1천만원 이하로 하되</u> <u>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u>	제7조(용자한도 및 이율) ① ----- <u>농어가당 2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u> <u>회사법인·작목반당 5천만원 이하로 하며,</u> <u>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2천만원 이하,</u> <u>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u> <u>이하로 하되 -----.</u>
<u>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u> <u>다.</u>	<u>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u> <u>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무이</u> <u>자로 한다.</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시서식에 의한 <u>대부신청서</u> 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 ----- ----- ----- <u>농어</u> ----- <u>업소득사업융자신청서</u> ----- -----
②제1항의 <u>대부신청서</u> 에는 재산세납부금액 2만원이상 관내거주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②---- <u>농어업소득사업융자신청서</u> ---- ----- ----- <u>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는 물적 담보, 나머지50퍼센트는 연대보증으로 한다.</u>
③ ~ ④(생략)	③ ~ ④(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 <u>새마을소득지원사업</u>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 ----- <u>농어업</u> ----- ----- -----
제17조(세입·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u>새마을소득지원사업</u> 기금과 제2조2항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세입·세출) ①----- ----- <u>농어업</u> ----- ----- ----- -----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u>새마을소득지원사업</u> 을 위한 융자금 및 자금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로 한다.	②----- <u>농어업</u> ----- ----- -----

【별지 서식】

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신청서

1. 마을명 : 시 읍·면·동 리 마을
 2. 대부신청금액 :
 3. 대부신청사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5. 대부신청사업계획 :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의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원계획 :

총사업비	읍 자	자 부 담 금	자부담방법	비 고

※ 사업비 산출 명세 : 별 첨

사. 사업수지예산

총 수 익	총 비 용	순 수 익	비 고

※ 사업수지예산명세 : 별 첨

6. 마을규약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새마을소득사업의 읍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위 신청인이 귀 시로부터 차용하는 읍자금에 대하여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연대보증인 주 소 :
 성명 : 인
 연대보증인 주 소 :
 성명 : 인
 연대보증인 주 소 :
 성명 : 인

파 주 시 장 귀하

2004년 2월 12일 (목)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사회적 여건변화와 경제적발전, 경영규모의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 지원한도 및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 농축산업 및 기타 1차산업의 농업경영중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무이자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제명 및 내용 중 “새마을”을 “농어업”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경
- 나. 특허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설하고, 융자한도를 농어가당 2천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단체는 1억원 이하로 하되 무이자로 지원(안 제5조제2항)
- 다. 일반지원사업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융자지원 한도를 농어가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대부이율을 2퍼센트로 하향조정 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 안건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융자지원금을 설치하여 지원해 오던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의 현재 사회적 여건변화와 경영규모의 확대 등 현 실정에 맞게 융자금의 한도 및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성과 일반지원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농축수산업 및 1차 산업관련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규모와 조건을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금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동 조례의 제명 및 내용중 “새마을”을 “농어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농축산업, 수산업 및 1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이고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에 특허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 융자한도를 농어가당 2천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단체는 1억원 이하로 하되 무이자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금년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쟁력 갖춘 사업에 대하여 특별지원 함으로서 소득향상과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연도별로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됨.

- 안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는 일반지원사업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융자지원한도를 농어가당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대부이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조정 하는 내용으로
-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가상승 등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이율도 하향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동 조례가 개정되어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많은 농어업인과 단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융자금 자금현황이 열악한 실정으로 특별한 대책이 요구 됩니다.
- 참고로 불임 2003년도 융자금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현황

□ 자금현황

○ 총자산 : 1,263,457천원

· 상환예정액(2008년까지) 740,167천원

· 03년까지 채납액 176,044천원

· 잔 액 347,246천원

○ 융자현황

년 도	전 수	금 액	비 고
2002	21	245,000천 원	
2003	19	220,000천 원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21
----------	-------------

제안년월일 : 2004년 2월 12일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구

1. 수정이유

융자금 한도 및 이율을 기금예산의 한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2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 이하”를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3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8천만원 이하”로 하고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무이자로 한다”를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연 1퍼센트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안 제7조제1항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2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 이하”를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3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8천만원 이하”로 수정함.

나. 안 제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2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 이하”를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3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8천만원 이하”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①융자 한도액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작목반당 5천만원, 농어가당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농어가당 2천만원 이하, 영농조 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5천만원 이하로 하며,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2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 인·작목반당 1억원 이하로 하되 -----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3천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농 업회사법인·작목반당 8천만원 이하로 하되 -----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 센트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퍼센 트로 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한다.	②----- -----, 다만, 특별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한다.